

『구미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·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(안 제2장)
- 외국인 투자의 지원(안 제3장)
 - 지방세 감면(안 제9조)
 - 구미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
 -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(안 제10조)
 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임대 및 특례 적용
 - 입지지원(안 제11조)
 - 외국인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
 - 국가산업단지, 지방산업단지, 논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
 - 고용보조금의 지원(안 제12조)
 - 20명 초과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내 지원
(기업당 최고 3억원)
 -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(안 제13조)
 -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 지원(최고 3억원)
 -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(안 제14조)
 -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 시
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
- 국내기업 투자지원(안 제4장)
 -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(안 제18조)
 - 고용보조금의 지원(안 제19조)
 - 20명 초과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 범위내 지원
(기업당 최고 1억원)
 -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(안 제20조)
 -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3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 지원(최고 1억원)
 -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(안 제22조)
 - 본사 이전기업 : 20명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(최고 5억원)
 - 공장 이전기업 : 20억원 초과금액의 5%내 지원(최고 2억원)
 - 국내기업지원 대상(안 제23조)
 - 투자금액이 20억이상, 신규고용 인원 20명이상 기업
- 투자유치 진흥기금(안 제5장)
 -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출연(안 제24조)
 -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
- 보 칙(안 제6장)
 -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(안 제26조)
 -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(안 제27조)
 - 투자유치 실적보상 및 성과급 지급(안 제31조)
 - 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·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성과급 지급

4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
 - 외국인투자촉진법
 - 조세특례제한법
 - 지방자치법
 -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
 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
 - 구미시세감면조례
 -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구미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제정준칙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,
- 주요 내용으로는
 -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(안 제2장)
 - 외국인 투자의 지원(안 제3장)
 - 지방세 감면(안 제9조)
 - 구미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
 -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(안 제10조)
 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임대 및 특례 적용
 - 입지지원(안 제11조)
 - 외국인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
 - 국가산업단지, 지방산업단지, 논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
 - 고용보조금의 지원(안 제12조)
 - 20명 초과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내 지원 (기업당 최고 3억원)
 -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(안 제13조)
 -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 지원(최고 3억원)
 -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(안 제14조)
 -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 시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 - 국내기업 투자지원(안 제4장)
 -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(안 제18조)
 - 고용보조금의 지원(안 제19조)
 - 20명 초과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 범위내 지원 (기업당 최고 1억원)

-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(안 제20조)

-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3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 지원(최고 1억원)

-이전기업에 대한 지원(안 제22조)

- 본사 이전기업 : 20명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(최고 5억원)
- 공장 이전기업 : 20억원 초과금액의 5%내 지원(최고 2억원)

-국내기업지원 대상(안 제23조)

- 투자금액이 20억이상, 신규고용 인원 20명이상 기업

○ 투자유치 진흥기금(안 제5장)

-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출연(안 제24조)

-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

○ 보 칙(안 제6장)

-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(안 제26조)

-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(안 제27조)

-투자유치 실적보상 및 성과급 지급(안 제31조)

- 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·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모법의 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 부합하기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○ 조례안의 내용이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,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